

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종류, 대상 및 기간
(제6조의4제1항 관련)

1. 교육의 종류 및 대상

가. 양성교육: 영 별표 1 및 영 별표 2에 따라 학력·경력에 따른 초급기술자 및 초급감리원의 등급을 받으려는 사람

나. 전문교육: 영 별표 1 및 영 별표 2에 따라 전력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자격 확인을 받은 사람

2. 교육내용 및 기간

종류	교육내용	교육기간
가. 양성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양 교육 ○ 전기 관련 법령 ○ 전기설비기술기준 ○ 전기기기 및 전기설비의 이해 ○ 전기설비검사업무지침 ○ 「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」 ○ 전기설비별 설계도서 검토(전력기술인만 해당한다) 	1주 (35시간 이상)
나. 전문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양 교육 ○ 전기 관련 법령 ○ 전기설비기술기준 ○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○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행정실무 ○ 「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」 ○ 전기설비별 설계도서 실무(전력기술인만 해당한다) ○ 설계업자·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	

비고: 위 표 중 전문교육은 교육대상자의 등급,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구분·실시할 수 있다.